

담당	책임자

## DB 적립금 이전 요청서

### 유의사항

- 적립금 일부를 (현금)이전하는 경우, 계좌의 현금잔고가 이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전하는 금융회사가 이전의사를 (재)확인 (유선 또는 방문)할 때 어떤 상품을 매도할지 운용지시를 하여야 적립금 이전이 가능합니다.
- 일부 적립금을 이전할 때, 이전금액이 미확정 (예 : 특정상품 매도액, 적립금 또는 상품 매도액의 10%)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(단, 적립금 전부이전 및 이전금액이 확정된 일부이전은 이전하는 또는 이전받을 금융회사 어디서든 처리가 가능)
- 실물이전 하는 경우에는 이·수관회사에 실물이전 가능여부 확인 후 실물이전 대상 상품 목록을 작성합니다.
- 실물이전 입고일 이후부터 적립금 수익률 조회가 가능하며, 퇴직연금사업자마다 수익률 산출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이전하는 금융회사 (운용관리기관명)	이전받을 금융회사		적립금 이전액*	실물이전 여부
	운용관리기관명	자산관리기관명		
				Y / N

\* 현금이전의 경우 ○○펀드 매도액, 전체 적립금(또는 상품 매도액)의 10% 등으로 표기도 가능

\*\* 실물이전의 경우 상품단위로 상품명 기재

※ 다수 → 다수 금융회사로의 이전을 병기할 수 있음(복수의 접수처에 사본제출도 가능)

